


개인형 IRP 핵심(요약)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개인형 IRP 거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개인형 IRP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유사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p>	<p>개인형IRP 계좌의 납입금액은 일정요건 충족 시 ①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 ②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게 되어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연금수령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확인·숙지가 필요합니다.</p>
<p>발생가능한 불이익사항</p>	<p>중도 해지 등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금수령("연금외 수령")의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가 부과되므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5.5~3.3%)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 위험등급 안내

<p>상품위험등급 필수확인</p> 	<p>당사는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 ~ 6등급(매우낮은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개인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필히 확인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	--

■ 유의사항 안내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령을 개시할 경우 수령계좌를 지정한 연금지급 개시신청서를 반드시 IRP 금융기관으로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편입자산 중 원금보장 ELB 또는 조기상환 DLB 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금개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형 IRP 를 가입하시기 전에 개인형 IRP 운용관리계약서,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 상담 및 민원 안내

<p>상담&민원</p> 	<p>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영업점, 고객센터 (TEL : 1588-6800), 연금자산관리센터 (TEL : 1588-5577),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p>
--	--

개인형 IRP 설명서

□ 알기 쉬운 위험 아이콘



※ 위 아이콘은 상품의 주요 위험만 나타낸 것으로 전체 위험은 반드시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개요	<p>저축금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령 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최소 5년* 이상 가입, 만 55 세부터 10 년 이상 매년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하는 개인형 퇴직연금</p> <p>* 단, 계좌 내 퇴직금이 있는 경우 최소 가입기간 5년 미적용 * 연금수령한도 및 세제제도는 하단의 상세 설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가입대상	<p>퇴직연금 DB/DC 가입자, 퇴직금제도근로자, 퇴직일시금수령자, 자영업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지역연금가입자, 타금융기관 IRP 당사이전 예정자</p> <p>* 단, 금융기관별 1인당 1개의 IRP 개설 가능</p>
가입일자	<p>IRP 최초 입금일자 (단, 신규 IRP 에 최초 입금액이 DC 퇴직금 전액인 경우 DC 의 가입일자 승계 가능, 신규 IRP 에 타연금계좌 수관 시 타연금계좌 가입일 승계 가능)</p>
연간 납입한도 설정	<p>소득세법상(시행령 40 조의 2) 연간 자기부담금 납입한도를 최대 1,800 만원*까지 설정(모든 금융회사의 IRP 및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할 수 있으므로, 계좌당 납입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에는 다른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연말 세액공제를 받는 기준금액은 900 만원인 반면, 고객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 만원임</p>
납입 한도	<p>연간 1,800 만원¹⁾ + ISA 만기계좌의 전환 금액²⁾</p> <p>1) 전 금융기관 퇴직연금계좌의 개인부담금, 연금저축계좌 합산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60 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p> <p>※ (참고) 다음의 금액은 당해 연도의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납입가능</p> <p>①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②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는 경우</p>
연금수령 조건	<p>① 만 55 세 이상으로 ② 가입일부터 5 년 경과시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간 수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40 조의2)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수령해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 단, 퇴직금여가 입금된 개인형 IRP 계좌는 만 55 세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연금수령이 가능</p>
연금수령 한도	<p>연금수령이란 연금수령한도 내의 수령을 의미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에 해당</p> $\frac{\text{개인형IRP계좌의 평가액}^{1)}}{(11 - \text{연금수령연차}^{2)})} \times \frac{120}{100}$ <p>1) 연금개시일이 속하는 해는 연금지급기준일 평가액이며, 다음해부터는 다음해의 1 월 1 일 평가액 2)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p>
적립금 운용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1 조의 3 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디폴트옵션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디폴트옵션으로 선정해야 합니다.</p> <p>부담금 입금 후 2 주 이내 고객님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만기가 있는 상품(정기예금, 이율보증보험 등)으로 운용방법을 선택한 경우 해당 상품의 만기일로부터 4 주가 지났을때로부터 2 주 이내 고객님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며, 매수 전</p>

디폴트옵션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디폴트 옵션의 상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폴트옵션을 선정하지 않거나 적립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대기성 자금(MMDA, CMA, 발행어음)으로 운용됩니다.

운용상품 교체·해지·계약이전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전에 매도할 경우에는 만기 약정금리 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펀드상품(특히, 만기가 정해진 펀드)은 편입한 후 단기간내(예: 2년)에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및 환매수수료율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부과

개인형 IRP 계좌에는, 대상기간 중 적립금 일별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구 분	대면개설시 연간 수수료율		온라인개설시 연간 수수료율				다이렉트 계좌관리점 연간 수수료율	
			계좌관리점 : 영업점		계좌관리점 : 다이렉트			
	운용관리 기본수수료율 (체차식)	자산관리 수수료율 (단일률)	운용관리 기본수수료율 (체차식)	자산관리 수수료율 (단일률)	운용관리 기본수수료율 (체차식)	자산관리 수수료율 (단일률)	운용관리 기본수수료율 (체차식)	자산관리 수수료율 (단일률)
고객 납입액	1억원미만	0.2%	면제	면제	면제 * 가입자가 전자매체 (온라인웹 또는 모바일) 만을 통해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	면제 * 다이렉트 계좌관리점으로 변경된 날부터 적용 (대면·비대면 계좌개설 무관)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18%						
	3억원이상	0.15%						
퇴직 급여	1억원미만	0.2%	1억원미만	0.2%	0.1%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18%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18%				
	3억원이상	0.15%	3억원이상	0.15%				

* 운용손익수수료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1년 이상 운용중인 금액에 대해서는 운용손익수수료를 적용함. 단, 초저위험 디폴트옵션 상품은 제외함

- 1) 디폴트옵션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이 기준지표보다 높은 경우 : 일별 운용관리기본수수료율
- 2) 디폴트옵션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이 기준지표와 같거나 낮은 경우 : 일별 운용관리기본수수료율 - 0.01% - 기준지표

- 1) 저위험 디폴트옵션 운용 : 직전 36개월간 초저위험 디폴트옵션상품 월평균 공시금리 + 1.50%
- 2) 중위험 디폴트옵션 운용 : 직전 36개월간 초저위험 디폴트옵션상품 월평균 공시금리 + 2.00%
- 3) 고위험 디폴트옵션 운용 : 직전 36개월간 초저위험 디폴트옵션상품 월평균 공시금리 + 3.00%

** 개인형 IRP에는 고객이 자기부담으로 납입할 수도 있고, 퇴직 후 퇴직금(퇴직급여)을 납입할 수도 있음

*** 기타 수수료 할인조건 및 연금수령단계 수수료율은 운용·자산관리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함

**** 수수료 계산 예시 (대면개설 - 고객 적립금 1천만원에서 디폴트옵션상품으로 500만원을 운용할 경우) :

기준지표 대비 성과구간	디폴트옵션 500만원 수수료율	일반상품 500만원 수수료율	일별 수수료 적용방식
초과 성과 달성 시	0.20%	0.20%	$(500\text{만원} \times 0.20\% / n) + (500\text{만원} \times 0.20\% / n)$ * n은 365 또는 366
동일 또는 미달 시	0.19%	0.20%	$(500\text{만원} \times 0.19\% / n) + (500\text{만원} \times 0.20\% / n)$ * n은 365 또는 366

※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는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 가능함

이와 별개로, 고객이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할 경우에는 해당 운용금액에 대해 펀드보수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보수율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액

연간 900만원(연금계좌 합산) ※ ISA 만기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최대 연간 1,200만원 한도 공제

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공제율		
	4.5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¹⁾	16.5%		
	4.5천만원 초과 (총급여액 5.5천만원 초과) ¹⁾	13.2%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제 제도	가입자는 저축금 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수령 및 자금 인출 전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면 과세제외금액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인출시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실제수령연차 ¹⁾ 10년 이하	실제수령연차 10년 초과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 X70%)	연금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 X60%)	이연퇴직소득세 (100%) 연금소득세 (이연퇴직소득 X70%)
	과세대상소득	연금소득세(3.3~5.5%) ²⁾		기타소득세(16.5%) 연금소득세(3.3~5.5%) ²⁾
	1) (연금)실제수령연차 : 연금수령한도(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계산 시 연금수령연차가 아닌 최초 연금수령한 연도부터 실제 연금수령한 연도를 계산하여 10년을 의미			
	2) 연령별 연금소득세 적용세율			
	구분		적용세율	
	나이 (연금수령일 현재)	만 70세 미만	5.5%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 연간 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 퇴직소득채원 및 부득이한 사유 제외) 1,500만원 초과 시, 소득자는 유·불리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연금수령연차 산정 시 특례				
① DB/DC 가입일자가 2013.3.1 전인 가입자가 퇴직금 전액을 새로 개설한 IRP로 최초 입금한 경우 : 기산연차 6년				
② 배우자 승계한 연금계좌 :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적용				
③타연금저축/IRP 계좌의 연금수령연차 6년차 적용 계좌이체금액을 새로 개설한 IRP로 최초 입금한 경우 : 기산연차 6년				
부득이한 사유 → 과세대상소득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				
①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② 개인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③ 천재지변,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피해				
④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퇴직소득에 한해 입금한날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만 적용)				
⑤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제출				
의료비 인출(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과세대상소득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				
① 만 55세이상 ② 가입 후 5년 경과 ③ 하나의 의료비연금계좌 지정 ④ 본인을 위한 의료비				
* 의료비 인출 업무는 당사 미 시행				
인출 요건	연금	가입 후 5년 경과(계약 내 퇴직금이 있는 경우 미적용) 및 만 55세 이후 정기 및 수시연금		
	일시금	계약해지		
	중도 인출	중도인출 요건에 따른 인출(전액/일부) ①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신청일로부터 5년 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③ 재난으로 피해 ④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⑤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 받은 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
인출 순서	<p>①과세제외금액→②이연퇴직소득→③과세대상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되어 원천징수</p> <p>※ (참고) 과세제외금액의 인출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 (단, 연금개시 후 인출 시 당해 납입액은 과세대상소득으로 변경됨) ② 해당 IRP 계좌에서 매년 세액공제한도액 및 ISA 전환금액 중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 ③ 그 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
계좌 이체	<p>기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보지 않고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p> <p>- 구체적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령이 만 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이 5년이 경과한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를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이하 개인형 IRP)로 전액이체 ② 연령이 만 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이 5년이 경과한 가입자가 개인형 IRP를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이체 ③ 개인형 IRP에서 개인형 IRP로의 전액이체
중도해지 세제	<p>고객이 자기부담으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 세액공제(13.2~16.5%)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공제액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p> <p>*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p>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형 IRP는 증권회사 ELB, 은행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자유롭게 운용 ·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은 투자위험한도(전체 적립금의 70%이내)에 적용되어 매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운용성과에 따라 인출액이 변동됨 · 고객은 연간납입한도 설정 범위 내에서 자유 적립 가능하나, 연금수령 개시 후에는 고객납입 불가 · IRP 이체프로세스를 통하여 세제 상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기관 또는 당사의 다른 연금계좌로 자유롭게 변경 가능 ·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금으로 전환 가능 · 고객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금액을 중도에 인출하더라도 세제상 불이익 없음(운용수익 제외)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등에 관한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투자성향이나 목적, 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인지 판단 후 신중히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편입자산에 따라 원금 일부 또는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금수령을 개시할 경우 수령계좌를 지정한 연금지급 개시신청서를 반드시 IRP 금융기관으로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 · 편입자산 중 원금보장 ELB 또는 조기상환 DLB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금개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형IRP를 가입하시기 전에 개인형IRP 운용관리계약서,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제시된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이며,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권익보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계약해지]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당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요구]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첫날 산입) 이내 제공

·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6800) 통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고객 불편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여부를 확인 후 상품의 특징·위험, 적합한 투자자여부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상품의 주요내용과 상품의 위험도, 최대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 또는 환매 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음을 확인합니다.